

---

# 해외현장실습 교육과정 안내 [학생용]

---

영 남 대 학 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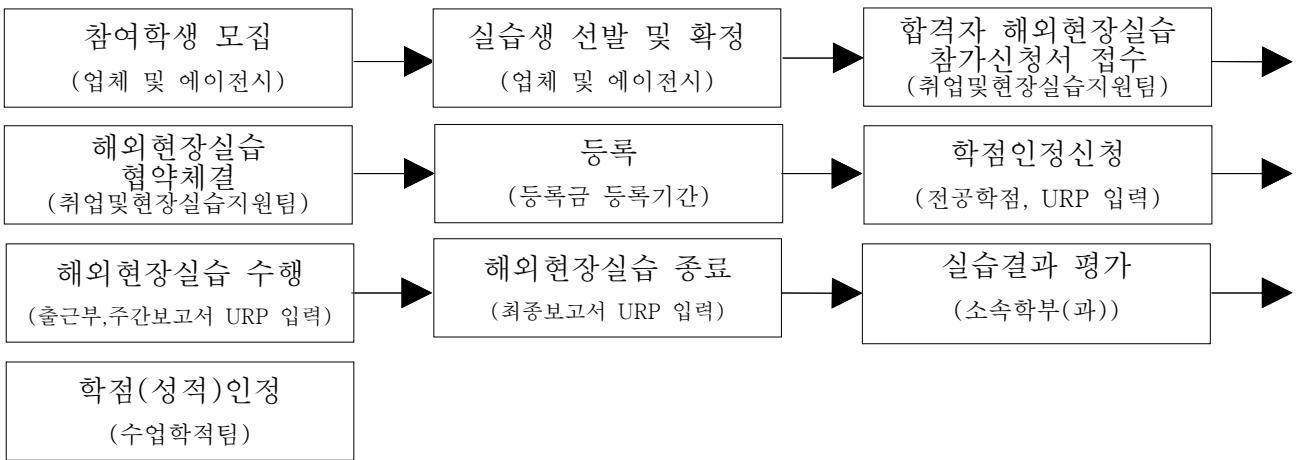
<b>I. 현장실습 운영절차 및 신청자격</b> .....	1
1. 해외현장실습이란 .....	1
2. 운영절차 .....	1
3. 모집기간 및 실습가능기간 .....	2
4. 신청자격 및 학적상태 .....	2
5. 해외현장실습 신청 불가능자 .....	3
6.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 .....	3
7. 제출서류 .....	3
<b>II. 해외 현장실습 운영 절차</b> .....	4
1. 해외현장실습 절차 .....	4
2. 제출서류 및 학점인정 절차 .....	4
<b>III. 학점인정 및 성적 부여</b> .....	5
1.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	5
2. 학점인정 .....	5
<b>IV. 해외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금</b> .....	6
1.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	6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6
3. 지원금 지급 시기 .....	6
<b>V. 해외현장실습 등록금(수강료) 납부</b> .....	7
1.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	7
2. 단기 및 중기 참가자 .....	7
3. 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	7
<b>VI. 주의사항</b> .....	8
1. 현장실습 신청시 주의사항 .....	8
2. 현장실습 이수에 관한 유의사항 .....	8
3. 주간보고서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 .....	8
4. 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9
5. 해외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	9
<b>VII. 기타사항</b> .....	9
1. 해외현장실습 자문위원 연락처 .....	9
2. 장학금 관련 안내사항 .....	9
3.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9
<b>[참고자료]</b> .....	11

# I. 현장실습 운영절차 및 신청자격

## 1. 해외현장실습이란

해외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 기간 해외에 소재하는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해외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 2. 운영절차



## 3. 모집기간 및 실습가능기간

학기	구 분	모집기간		실습가능기간
		기업(기관)	학생	
계절제	단기 해외현장실습	상시	상시	4주 ~ 8주
	중기 해외현장실습			
학기제	장기 해외현장실습	상시	상시	12주 ~ 20주

## 4. 신청자격 및 학적상태

	공 통	주한미군부대
신청 가능학기	<b>4개 학기 이상 이수자</b> (미국 J-1 비자 인턴은 5개 학기 이상)	<b>3학년 이상</b>
학적상태	재학생 (현장실습 학점취득학기 기준 학적 상태)	
참고사항	휴학생은 현장실습 신청은 가능하나 학점인정 불가 및 학교 지원금 없음	<b>졸업(수료)예정자 및 학점단위등록자 파견 불가</b>

### 5. 해외현장실습 신청 불가능자

- 가) 우리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나) 졸업(수료)예정자 및 학점단위 등록생 원칙적 신청불가

단, 해당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 학점 취득 완료 가능 한 자(주한미군부대는 해당 안됨)

2월 졸업예정자	해당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실습종료 및 실습보고서 작성이 완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8월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 실습종료 및 실습보고서 작성이 완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다) 국내외 현장실습(STUDY ABROAD(국제교류팀) 포함) 이수학점이 최대 32학점 이상 이수자
- 라) 국내외 현장실습 학점을 포함한 인정(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1/2에 해당 하는 자
- 마) 학·석사연계(5년 과정) 대상자
- 바) 외국인 유학생

### 6.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

구분	교과목명	개설학기	인정학점	실습요건
단기	해외현장실습(1) 해외현장실습2(1)	계절학기	3학점	4주(16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4) 해외현장실습2(4)			
중기	해외현장실습(2) 해외현장실습2(2)	계절학기	6학점	8주(32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5) 해외현장실습2(5)			
장기	해외현장실습(3) 해외현장실습2(3)	정규학기	9학점	12주(480시간) 이상
			12학점	16주(640시간) 이상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20주(800시간) 이상	

※. 실습요건은 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되, 기업의 특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에 의거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7. 제출서류

- ①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 소정양식
- ② Job Offer Letter 혹은 Training Offer Letter : 소정양식
- ③ 해외현장실습(인턴) 비자 사본 제출 (Ex. 미국 J-1 비자 및 DS-7002 사본 등)
- ④ 여권사본
- ⑤ 해외현장실습 보험 가입증서

※주한미군부대 실습 확정자는 ①, ②서류만 제출

## II. 해외 현장실습 운영 절차

### 1. 해외현장실습 절차

구분	작성	내 용
실습생 (학생)	해외현장실습 신청 (소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인턴 최종합격자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및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li> <li>• 현장실습 신청시 학부(과)장(or 전공주임 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li> <li>※ 졸업예정자가 장기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해 소속 학부(과)에 상담 필.</li> </ul>
기업 (기관)	기업 회원가입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기업회원 로그인</li> <li>•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해외현장실습 신청관리]에서 신청</li> </ul>
실습생 (학생)	해외현장실습 신청 (URP)	• URP-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해외) 입력
	해외여행신고	• URP - 학생관리-해외여행신고 입력
기업(기관)	실습생 선발 및 전자협약 체결	•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 - 선발/협약 관리에서 실습생 최종 선발 및 협약 체결
실습생 (학생)	학점인정 신청	• URP-현장실습관리-학점인정 신청 현장실습담당업무 및 전공인정신청사유 입력(전공학점 신청자)
학부(과)	학점인정 심사	• 학부(과)별 회의를 통해 전공학점 인정 심사
실습생 (학생)	출근부	• URP-현장실습관리-출근부 입력 ※ 해외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부 작성
	주간보고서	• URP-현장실습관리-매주 주간보고서 작성 ※ 실습기간 지정 : 주단위로 작성 (평일 5일 기준 기간입력)
	최종보고서	• URP-현장실습관리-최종보고서 작성 ※ 실습 전반적인 내용, 느낀 점, 취업연계사례, 건의사항 등 작성
	설문조사 작성	• URP-현장실습관리-참여 학생 설문조사 작성

### 2. 제출서류 및 학점인정 절차

구분	작성	내 용
실습생 (학생)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근부 전체 (실습 종료 후 URP에서 출력하여 실습기관 담당자 서명 날인)</li> <li>• Intern Evaluation Report(소정양식, 실습기관 담당자 서명 날인)</li> <li>• 출입국 사실증명서(미국은 I-94도 가능)(민원24, 공인인증서 필요)</li> <li>• 급여표(실습기관 발급 서식)</li> </ul>
기업 (기관)	출근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생 출근부 작성 완료 후, 기업 관리자 학생 출근부 검토 확인</li> <li>• 홈페이지-[기업관리]-[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li> </ul>
	현장실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담당자로부터 받은 평가표(Intern Evaluation Report) 입력</li> <li>• 홈페이지-[기업관리]-[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실습생평가] 작성</li> </ul>
학부(과)	학점인정 진행	• 제출서류 검토, 학점인정 절차 진행
실습생 (학생)	이수확인서 발급	• 현장실습 학점인정 완료 후 URP에서 출력 가능(Pass한 경우만 해당)

### III. 학점인정 및 성적 부여

#### 1.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개설학기	구분	실습기간 및 시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계절제	단기	4주(160시간) 이상	대학공통 : 3학점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중기	8주(320시간) 이상	대학공통 : 6학점	
학기제	장기	12주(480시간) 이상	대학공통 : 9학점	
		16주(640시간) 이상	대학공통 : 12학점	
		20주(800시간) 이상	16, 18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 현장실습 기준 : 주 5일, 일 8시간

#### 2. 학점인정

##### 가. 공통사항

- 1) 학점인정학기 : **해외현장실습 수행학과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 2)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인정가능 학점 기준
  - 가) 현장실습은 STUDY ABROAD(국제교류팀), 단기(학부·과 전공 현장실습 포함), 중기 및 장기 등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32~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속학부(과)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따라 최대이수가능 학점 수 32학점 또는 36학점**
  - 나) 현장실습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대학공통

- 1)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단, **실습직무 내용이 전공 관련인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작 후 1주 내에 [전공인정 신청사유]를 작성 완료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전공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전공학점신청 방법 : [학생종합시스템-현장실습관리-학점인정심사]에서 신청서 작성
- 2) **해외현장실습 인정학점을 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 가)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신청 불가(일반선택 인정)
  - 나)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에서 신청 불가(일반선택 인정)  
 ※ 주전공에서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다) 편입생은 신청 불가(일반선택 인정)
  - 라) 기타 일반선택으로 지정된 해외현장실습
- 3) 장기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조합하여 신청 가능.
  - 가) 장기 해외현장실습 최대 인정가능 학점 수 : 16 또는 18학점  
 (소속 학부(과)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참조)
  - 나) 학점조합 신청 산정기준은 3학점 단위 전공선택으로 우선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

택으로 인정(예,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16학점 취득인 경우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4학점 취득 가능)

다) 학점단위 등록 학생은 3,6,9학점 중에서 선택하여 인정 가능

라)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조합표

학점		9학점		12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16학점		18학점	
이수구분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이수 구분별 인정 학점	일반선택	0	9	0	12	0	16	0	18
	전공선택	3	6	3	9	3	13	3	15
		6	3	6	6	6	10	6	12
		9	0	9	3	9	7	9	9
		—	—	12	0	12	4	12	6
		—	—	—	—	16	0	15	3
		—	—	—	—	—	—	18	0

## IV. 해외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금

### 1.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구분	실습기간	인정학점	지 원 금		
			해외	주한 미군부대	학점단위등록생
단기	4주 이상	3학점	20만원	—	—
중기	8주 이상	6학점	40만원	—	—
장기	12주 이상	9학점	180만원 ~ 200만원 미국/호주/홍콩/유럽 200만원 기타지역(일본 등) 180만원	90만원	이수학점에 따라 지급 3학점 : 20만원 6학점 : 40만원 9학점~ : [해외]와 동일
	16주 이상	12학점		120만원	
	20주 이상	16~18학점		150만원	

※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가. 현장실습 이수학기에 휴학, 현장실습 포기 등의 이유로 학점 취득 불가시 지원금 지원 불가
- 나. 기타 우리 대학을 통해서가 아닌 외부 기업(관)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참가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 기타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

### 3. 지원금 지급 시기 : 해당학기 현장실습 성적평가 완료 후 지원금 지원 대상자 일괄 지급 처리

## V. 해외현장실습 등록금(수강료) 납부

### 1.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학점인정학기 : 정규학기]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 가. 장기 현장실습 교과목은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 나. 등록금 납부 기한 :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다. 학점단위 등록자의 경우 **해당학기 신청학점에 따라 수강료(등록금)**가 달라지므로 유의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금납부 → 학점단위등록 참조)

### 2. 단기 및 중기 참가자 [학점인정학기 : 계절학기] 해당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 1) 단기 해외현장실습(3학점) : 6만원
- 2) 중기 해외현장실습(6학점) : 12만원
- 3) 수강료 납부 계좌 : **대구은행 91000-1127-1790** (예금주 : 영남대학교 총장)  
 ※ 수강료 납부 시, 반드시 본인 학번 뒤 4자리와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입금자 확인가능  
 (계좌주 변경 불가 시, 본인 이름 입금에 한해 이체 가능)  
 예) 21612345 김영남 : “2345김영남” 으로 입금 요망

### 3. 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가. 근거 : 학칙 제65조(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나. 해외현장실습 수강료 반환 기준 : 학칙 제65조(등록금 및 수혜비 반환) 제2항에 따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반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간 중 본인의 사정(어학연수, 개인사정 등) 또는 잘못으로 실습을 중단(포기, 취소, 허위 발견)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납입금 반환 인정일자는 수업학적팀으로 자퇴 또는 휴학 신청이 접수 완료된 날**을 기준 함.

단, **계절학기 등록 후 실습 포기자는 [현장실습 포기신청서]를 접수해야 환불 처리 가능**

※ 성적처리 후, 본인의 과오로 인하여 취득학점 변경 시에는 수강료 환불 절대 불가  
(예) 계절학기 6학점→3학점)



## VI. 주의사항

### 1. 현장실습 신청시 주의사항

- 1) 장기현장실습은 인정학점에 관계없이 정규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과 4분의 3선을 포함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 2) 학점단위 등록생은 현장실습 학기제는 신청가능하나 계절제(단기 4주, 단기 8주)는 신청할 수 없다.
- 3) **주한미군부대는 MOU 체결에 따라 정해진 실습기간 동안 모두 근무**해야 한다.
  - 근무기간 : 1학기 : 3월~8월, 2학기 : 9월~익년 2월로 기본 6개월 근무
  - 급 여 : 무급(교통비, 식비 지원 없음)
  - **주한미군부대 인턴으로 최종합격 하였으나, 부대 사정으로 해당학기 1/4선을 초과하여 실습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부대 실습은 취소한다.**(학칙상 학점인정 불가)  
※ 주한미군부대 파견 학생은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을 필히 해 둘 것.
- 4) 현장실습 신청
  - 가. 해외현장실습(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처리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참여학생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나.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6학점(계절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단, 휴학생은 신청 불가)
  - 다. **해외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현장실습 이외 모든 강좌(인터넷강좌 포함) 수강 불가**
- 5) 현장실습은 재이수 과목이 아니므로 동일한 교과목 명(동일 학수번호)으로는 중복 이수 불가

### 2. 현장실습 이수에 관한 유의사항

- 가. 현장실습생은 실습기업(과)에서 지정한 실습기간 또는 과정별 실습기간만큼 근무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결근 등으로 인해 최소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근일수(시수)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함.
- 나. 해외현장실습 이수기간 중에는 교내 타 교육프로그램(취업캠프, 리더십캠프, 해외자원봉사,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중복 참여 불가.** 추후 관련사실 적발 시,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취소 처리 및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바람.

### 3. 주간보고서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

- 가.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교육부 감사 자료**이며, 학부(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함.(불성실하게 작성시 학점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나. 현장실습 첫날, 실습기업(기관)에 **안전교육을 요청하고**, 교육 내용을 주간보고서에 작성
- 다. 주간보고서는 월~금까지 날짜를 지정하여 매주 성실하게 작성해야 함.
  - ① **주간별 담당업무 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입력**
  - ②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어려움) 또는 소감
  - ③ 취업 또는 전공과 연계성이 있게 작성
  - ④ 주간별 업무 내용을 차수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입력은 인정 불가
  - ⑤ 현장실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학점 불인정.

#### 4. 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가. 현장실습생이 실습 기업(기관)과 협의 없이 실습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 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다. 전화 등으로 해외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할 때 2회 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라.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마. 현장실습 해당학기 미등록 또는 계절학기 현장실습 시작전까지 수강료 미납한 경우
- 바. 기타 해외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 해외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 가.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다만,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나.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근로자 공급업체 등
- 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라.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
- 마.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씨빙 등 단순노무직종
- 바. 야간(22:00~07:00) 근무 직종
- 사. 기타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기관) 및 직종

## VII. 기타사항

### 1. 해외현장실습 자문위원 연락처

미국 자문위원 연락처	성명 : Kathy Kim(캐티 김) 주 소 : 3660 Wilshire Blvd. # 336, Los Angeles, CA 90010 Phone : (Office) 213-456-6900, (Cell) 213-700-4849 e-mail : 2kathykim@gmail.com
----------------	--

### 2. 장학금 관련 안내사항(문의처 : 장학팀 053-810-1141)

#### 가. 교내·외 장학금 지급 신청

- 1) 한 학기 수강과목 중 P/F 과목이 6학점을 초과(6학점까지는 포함되지 않음)하는 경우에는 교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2) 한 학기 수강과목 전체 P/F 과목인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은 현장실습 이수 직전학기 성적평가 기준 반영하여 신청 가능

#### 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

- 1)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 12학점 이상 학점이수, 취득성적 80점(환산점수) 이상
-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 : 12학점 이상 학점이수, 취득성적 70점(환산점수) 이상

### 3.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문의처 : 수업학적팀 053-810-1064)

- 가. 졸업예정자가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한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자동발급 안됨.
- 나. 수업학적팀으로 연락해야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조치 가능

#### 4. 안전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가. 해외현장실습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실습기업(기관)에 재물손상 등을 끼친 경우에는 에이전시, 보험회사 및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하여, 관련 후속 업무처리(보험처리 등)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5 문의처 :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주소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학생지원센터 101호,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해외현장실습 : 053-810-1049 E-mail : intern@yu.ac.kr

## [참고자료 해외인턴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구분	주관기관(업체)	프로그램명	담당자 연락처
공 공 기 관	경북도청	경북해외인턴자문기업 인턴십(미국 J-1 인턴) (H-mart, Seoul Trading, Hotel Stanford 등)	경상북도 최상남 주무관 054-880-2735 csn0723@korea.kr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인턴십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박소영 대리 02-6000-5366 zero078@kita.net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064-786-0287 gottogether@okf.or.kr
	국립국제교육원	미국 WEST 인턴(어학연수+인턴)	국립국제교육원 해외유학인턴팀(WEST) 02-3668-1461~1467/1448/1307 www.niied.go.kr/koreawest@korea.kr
	홍콩한인상공회	홍콩한인상공회 대학생 인턴십, 워킹홀리데이(외식업) 모집	최시연 사무국장 (홍콩)+852 2544 1713 info@kocham.hk
에 이 전 시	ICCE*	미국 J-1 인턴(12개월)	Danielle 팀장 danielle@icceusa.com www.icceusa.com
		협약기업 비자 대행 : 아진산업/화신/ActiveUSA/하나팩토리	
	IGE*	미국 J-1 인턴(12개월)	Sun You internship@igeworld.org Kakao: IGEUSA(미국)/Globaljob(한국) www.igeworld.net
	글로벌커리어 솔루션 (KICEA)	태국 호텔, 미국 J-1인턴(6개월)	이충효 대표 070-5151-1600 chlee@gcsolution.co.kr https://globalcareersolution.com/
	엘프라우드*	미국 J-1 인턴	lproud@i-pround.com 031-715-2207
	플러스커리어 코리아*	미국 J-1 인턴	박대헌팀장 02-561-6306 pluscareerthp@gmail.com
	JOB USA	의류패션학과 전용 미국 J-1 인턴 에이전시	John H. Lim(준림) johnlimusa@naver.com

참고 : \*표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민간알선지원장려금이 있음.

에이전시 기관은 프로그램 알선비용이 있으며, 기관마다 그 비용이 다름.

## [참고자료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속방법 :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 메인 - 상단메뉴 - 사업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착지원금, 민간알선지원

###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4,400명(선진국 3,000명/ 지원금 우대국가 1,400명)  
※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국가 및 신청 차수별 마감)
- 지원금액 : 지원금 우대국가(최대 800만원), 선진국 분류국가(최대 400만원)

### 2. 지원대상

- ① 만 34세 이하( '85. 1. 2이후 출생자)인 자
-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3. 취업인정기준

-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③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④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이 1년 이상
- ⑤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4. 신청 방법 : 「월드잡플러스 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등. pdf는 제외)로 각각 업로드

### 5. 기타유의사항

- ① (접수순 지급)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는 검토 후 접수순으로 지급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소진 시 즉시 마감함
- ② (온라인 접수)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홈페이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http://www.worldjob.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
- ③ (기타 사항)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

■ 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일부 추출한 자료임.

■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 메인 - 상단메뉴 - 사업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착지원금, 민간알선지원 - 정착지원금 Q&A게시판 참조

[별첨 1]

계절학기 현장실습 기간조건표(1)

- 해당학기에 따라 기간이 다름 -

▶ 학점인정학기 : 20○○학년도 하계/동계 현장실습

단기 현장실습(4주 이상)		중기 현장실습(8주 이상)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 유의사항

- ① 실습기간의 경우 학생과 대학·기업(기관)이 협의하여 위 조건표의 최저 실습기간 이상으로 협약이 가능함.
- ② 현장실습은 평일 주5일 근무 원칙으로, 주말(토, 일요일)은 실습가능 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
- ③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별첨 2]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조건표(2)

- 해당학기에 따라 기간이 다름 -

▶ 학점인정학기 : 20○○학년도 ○학기 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12주 이상 → 9학점)		장기현장실습 (16주 이상 → 12학점)		장기현장실습 (20주 이상 → 16 or 18학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 유의사항.

- ① 실습기간의 경우 학생과 대학·기업(기관)이 협의하여 위 조건표의 최저 실습기간 이상으로 협약이 가능함.
- ② 현장실습은 평일 주5일 근무 원칙으로, 주말(토, 일요일)은 실습가능 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
- ③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 [별첨 3]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대학	학부(과)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비고
		기준 학점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 학점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 학점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문과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16	19	16	19	16	19	
	그 외 학부(과)	18	21					
공과대학	전체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16	19	
기계IT 대학	전체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정치행정 대학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	-	18	21	18	21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b>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기준학점: 16</b> 최대 수강가능학점: 19
	군사학과	-	-	18	21	16	19	
	그 외 학과	16	19	16	19	16	19	2014학년도 이전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입학자 중 학칙에 따라 새마을국제개발학과로 소속 변경된 학생 포함
상경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경영대학	전체	18	21	18	21	16	19	
의과대학	의예과	20	24	20	24	20	24	
약학대학	전체	20	24	20	27	20	27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최대 27학점
생명응용 과학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생활과학 대학	의류패션학과	16	19	16	19	16	19	
	그 외 학부(과)	18	21					
사범대학	전체	18	21	18	21	18	21	
디자인미술 대학	전체	16	19	16	19	16	19	
음악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생명 공학부	생명공학부	16	19	16	19	16	19	
건축학부	건축학부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16	19	
기초교육 대학	정책과학전공	16	19	16	19	16	19	
	인문자율전공학부	18	21	16	19	16	19	



## [별첨 4] FAQ

Q) 해외현장실습 신청구분별 자격요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구분	대학공통
신청학년	4개 학기 이상 이수자(미국 J-1 비자 인턴은 5개 학기 이상 이수자)
대상학부(과)	대학전체
공통	▶ 동일한 교과목명의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재이수 불가
유의사항	▶ 같은 학부(과) 소속 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해외현장실습 신청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외현장실습 신청 시, 본인 신청현황(신청 구분)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람.

Q) 복수전공자 및 편입학생은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전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일반선택으로만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

Q) 부전공자는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한가요?

☞ 부전공자는 부전공에서 전공선택 신청이 불가하나, 주전공에서는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공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해외현장실습 인정학점은 최대 몇 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한가요?

☞ 국내 및 해외현장실습을 합하여 소속 학부(과)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따라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Q) 장기현장실습(20주 이상) 이수 시 몇 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기현장실습(20주 이상)인 경우 학부(과)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따라 16, 18학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시 학부(과)별 및 입학년도에 따른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적용됩니다.

※ 장기해외현장실습(12주) - 9학점, 장기해외현장실습(16주) - 12학점

Q) 9개 학기 학점단위 등록학생인데, 장기현장 실습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학점 단위 등록생도 장기해외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단위 등록은 3, 6, 9학점으로 학점단위 등록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생의 졸업학점 여부를 판단하여 최소학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해외현장실습 기간 전체 실습하여야만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3학점을 신청한다하여 4주만 실습할 수는 없습니다.

Q) 휴학생은 해외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한가요?

☞ 신청자가 휴학중인 학기에 학점인정이 되는 해외현장실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휴학 중 학점인정과 관계없는 경우 현장실습 참여는 가능하나, 지원금은 없음

Q) 졸업유예 등의 사유로 해외현장실습 인정학점을 부분적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 해외현장실습 인정학점은 부분적으로 취득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해외현장실습 20주 이수, 18학점 인정 신청자가 졸업유예를 위해 15학점만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학점 그대로 성적취득이 됩니다.

Q) 학점인정은 언제 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모두 완료하고, 현장실습 학점인정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수업학적팀의 학점인정 완료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됩니다.

Q) 해외현장실습 이수 후 이수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Pass) 완료 후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해외현장실습관리] - [해외현장실습 이수확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별첨 5]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신청 구분 (○ 표시)	구분	실습기간	신청학점	선택	
	단기 해외현장실습	4주 이상	3학점	(일반/전공)	
	중기 해외현장실습	8주 이상	6학점	(일반/전공)	
	장기 해외현장실습	12주 이상	9학점	(일반/전공)	
		16주 이상	12학점	(일반/전공)	
		20주 이상	16/18학점	(일반/전공)	
	학점인정 신청 시기	20 학년도 학기, 학점인정 해당없음( )			
	복수전공/부전공/편입생 여부	복수전공(O, X), 부전공(O, X), 편입생(O, X)			
<b>현장실습 이전 이수내용</b>	ex) 20XX년도 XX학기 일반/전공 X학점 이수				
인적사항	성명	소속대학			
	학부(과)/전공	학년/현학기	학년, /8개학기		
	학번	휴대전화			
	Email	에이전시 명			
현장실습 신청내용	업체명	현장실습 관리자 담당부서			
	업종	현장실습 관리자 성명			
	대표자명	현장실습 관리자 직책			
	전화번호 (국가번호 포함)	현장실습 관리자 Email			
	종업원 수	현장실습 관리자 전화번호			
	근무지 주소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내용				
현장실습 보험내용	보험사	보험가입번호			
<p>본인은 현장실습을 이수하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현장실습이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생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현장실습 관련 보험(의무사항)에 따른 보상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신청인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인)</p> <p>※ 졸업예정자가 장기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해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께 지도 받기 바람.</p>					
<p><b>영남대학교 총장</b> 귀하</p>					

# 추 천 서

대 학		학 부 ( 과 )	
전 공		학 년	
성 명		학 번	
실 습 기 관 명		국 가	
근 무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실 습 직 무			
신 청 학 점	(전공/일반 학점)	학점인정학기	20 년 학기

위 학생을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주관하는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붙 임 : 1. 현장실습 참여학생 (특별)동의서 1부  
 2. Job Offer Letter 혹은 Training Offer Letter 1부  
 3. 해외현장실습(인턴) 비자 사본 1부(미국 J-1 비자 및 DS-7002 사본 포함)  
 4. 여권사본 1부  
 5. 해외현장실습 보험 가입증서 1부

# 현장실습 참여 학생 학부모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취업처장 이승우입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학사 전반적으로 변동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외부 기업(기관)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에 부합한 일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 증진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충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영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대학교 취업처장 이 승 우 올림

**1. 현장실습 신청자(자녀)의 학적기본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자녀) 소속	대학		학부(과)	학생 전공		
학생(자녀) 학번		학년		성명		성별
학부모 성명				관계	부( )	모( )
학부모 연락처						

※ 위 본인은 자녀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2. 다음의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읽은 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하시면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확인</b>	1. 자녀가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확인</b>	2. 정부 및 영남대학교, 실습기업(기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b>확인</b>	3. 현장실습 참여기간 중 실습기업(기관)이 아닌 별도의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밀집시설 (유흥장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확인</b>	4. 자녀 또는 주변 사람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자격격리 통지서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 발열 등 한 가지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확인</b>	5.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하여 제반되는 문제의 경우, 학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대학에 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보호자 성 명 : \_\_\_\_\_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동의서

1. 현장실습 신청자(학생 본인)의 학적기본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학번	
성명		학년	
재학상태	휴학 / 재학	예정상태 (URP에서 확인)	졸업예정 ( ), 수료예정 ( ) 조기졸업 대상자 ( )
입학구분	신입학 / 편입학	교직이수	( O / X )      전공
부전공	( O / X )      전공	복수전공 (복수1전공만 작성)	( O / X )      전공

※ 위 본인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2. 다음의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읽은 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하시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1. 정부 및 영남대학교, 실습기업(기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등을 잘 지키겠습니다. → 마스크 반드시 착용, 기침예절 지키기, 손 씻기 등	
확인	2. 현장실습 참여기간 중 실습기업(기관)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밀집시설(유흥장소 등 다중이용시설) 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3. 본인 또는 주변 사람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발열 등 한 가지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	4.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실습생(학생) 본인이 책임을 지며, 대학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Internship offer letter

The Host Company shall accept inter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offer letter.

Company Name			
Contact Person		Title	
E-mail Address			
Website			
Address			
Tel.			
Name of Intern			
Position			
Job Descriptions			
Stipend(After Tax)			
Work Hours	근무시간을 적어주세요 ((예)09:00~18:00, 5day a week(40 hours)) 작성후 삭제해 주세요		
Started Date		Expected Term	
Host Company's Signature			
Intern's Signature			

**[별첨 6] 해외현장실습 기업(관)의 실습생 인사평가표(양식)**

## Intern Evaluation Report

Name of Intern: \_\_\_\_\_

Major: \_\_\_\_\_

Date of Birth: \_\_\_\_\_

Period of Internship: \_\_\_\_\_

Start Date(dd/mm/yy)\_\_\_\_\_ Finish Date(dd/mm/yy)\_\_\_\_\_

Evaluation Rubric	Excellent	Good	Fair	Poor
<b>Meeting the deadline:</b> Is the participant completing work within the time limit?				
<b>Attitude:</b> Is the participant performing tasks confidently and accurately?				
<b>Capacity:</b> Is the participant able to pick up information quickly and come up with solutions and alternatives?				
<b>Work technique and application:</b> Does the participant possess relevant work techniques and apply them accordingly?				
<b>Risk and problem management:</b> Is the participant able to deal with a problem or risk at hand?				
<b>Teamwork:</b> Does the participant interact with colleagues well a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m?				
<b>Compliance:</b> Does the participant comply with rules and conditions of your organization (company) and respect authority figures?				
<b>Initiative and motivation:</b> Is the participant eager to take initiative and stay motivated?				
<b>Acceptance:</b> Does the participant take criticism without being offensive or defensive and use feedback constructively?				
<b>Supervisor Comments</b>				

※ Contact information of the evaluator (the supervisor of the student)

1. Name:
2. Job title:
3. Name of organization (company):
4. Address of organization (company):
5. E-mail/Office Phone Number: \_\_\_\_\_ /

Signature: \_\_\_\_\_

[별첨 7] 해외현장실습 포기 신청서(양식)

**해외현장실습 포기 신청서**

1. 포기자 인적사항

대 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년		학번	

2. 실습기관(업체) (국가 :            )

3. 실 습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포기 신청일

5. 포 기 사 유                        (구체적으로 작성)

6. 확인사항                        (확인 후 동의시 □에 √표시)

수강료 반환기준 확인

실습 포기로 인해 현장실습 학점 취득 불가 시  
  지원금 지원 불가 안내 확인

위와 같은 사유로 20   학년도 00학기 해외현장실습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납입금(수강료, 등록금) 반환 절차

- ☞ 계절제는 해외현장실습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수강료 반환 절차 진행
- ☞ 학기제는 수업학적팀으로 자퇴 또는 휴학신청을 접수 완료해야 학칙 제65조 2항에 따라 등록금 반환 절차 진행